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8. 7 선고 2017가단22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결 2018. 7. 10

판 결선고 2018. 8.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답 1,30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2. 6. 접수 제29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D은 전남 완도군 C 답 1,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 여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70. 3. 16. 접수 제6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0. 3. 12. 매매)를 마쳤고, D의 사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완도등기소 1994. 10. 18. 접수 제208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3. 7.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마쳤다.

나. E, F, G는 2006. 7. 6. 피고에게 '피고가 1994. 11. 5.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위 보증서를 토대로 2007. 1. 8. 완도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2. 6. 접수 제29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4. 11. 5. 매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 G의 각 증언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이용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철